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목 차>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작 성 자	이름	권민재
	담당부서 (과)	방사선안전과		직급	서기관
	국장	박진희		연락처	02-397-7273
	과장	임종윤		이메일	kwonmj@mail.g o.kr

2026. 08. 24.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박진희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요건								
	2.규제조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3.위임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0조의 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일정 수준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기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의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종사자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7.규제내용	핵연료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리자 지정일로 역산하여 2년 이내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자를 대리자로 지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핵연료물질사용자 : 2025년 기준 15개 기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핵연료물질사용자</td><td>15개(2025년 기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핵연료물질사용자	15개(2025년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핵연료물질사용자	15개(2025년 기준)								
9.규제목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부재 시에도 안전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핵연료물질 취급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52조의3(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영 제70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4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 취급업무 종사 경력 및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이란 핵연료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리자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 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면허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 조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종사자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역할 대리 수행을 위해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핵연료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3년 이상)과 안전관리자 교육(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을 받은 자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핵연료물질취급자 (15개 기관)	'26.7.13/서울(대면 간담회) ※ 불참기관은 서면 의견수렴	핵연료물질 취급 경력 관련 특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경력도 인정하는 방안 제안	중장기 검토 필요

3. 규제목표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면허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핵연료물질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권고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 법상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에 관한 세부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리 자격을 규정한 것이므로 규제 목적과 수단이 타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핵연료물질 취급에 상당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 감독책임자로 두고, 필요시 해당 책임자의 대리자를 사전에 선임·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구분	근거조문
사용시설 등에 관한 보안규정의 심사기준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12 제1항 제3호 관련 주요 기준 - 핵연료물질의 취급에 관해 지도·조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춘 자를 안전 감독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고, 그 직무 및 책임 범위가 안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함 - 핵연료 물질의 사용 등을 수행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조직 규모, 한 공장 또는 사업장당 여러 개의 사용 시설 등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충분한 보안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u>보안 감독 책임자의 대리자를 미리 선임하여 배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u>

○ 타법사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령은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구분	근거조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④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절차 및 업무,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⑤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삭제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에서 일정 수준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행정 부담이 적어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모든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또는 소지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어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규제집행에 문제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업무 수행)에서 허가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규제집행에 대한 재정적 문제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26.5.19.

* 주요내용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및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 의무화

-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등 제·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 '26.6.25.

-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등 제·개정안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 '26.7.13.

2. 향후 평가계획

-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 핵연료물질 취급 관련 안전 사고 발생 여부 등 규제집행 현황 및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

3. 종합결론

-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기관의 방사선안전 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을 참조하여 핵연료물질안전 관리자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등 원자력안전법상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 하게 하는 것은 타법사례 등을 참조할 때 합리적인 조치이며, 종사자 및 공공의 안전 도모에 기여
- 적절한 자격을 갖춘 대리자는 기존 종업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어 사업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크지 않고, 핵연료물질안전 관리자의 부재 시에도 안전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핵연료 물질 취급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핵연료물질 사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